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19. 12. 13. 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최봉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19. 12. 5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  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)
  -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(안 제6조 및 제7조)
  -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
- 교통안전교육, 협력체계 구축,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(안 제13조~제16조)
- 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 폐지 (안 부칙 제2조)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정옥)

○ 본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「교통안전법」에 서 위임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#### O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
-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
- 안 제8조  $\sim$ 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항
- 안 제13조 ~ 제1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, 협력체계 구축, 교통지도 및 재 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.
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」 폐 지를 규정함.
-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라 운용 중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안임.
- 검토 결과,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 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위원회 명칭, 위원 수 등이 「교통안전법」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통합·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. 또한,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과 관련 기관과의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·추

진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구민의 생명·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

발의년월일: 2019년 11월 일

발 의 자:최봉희 의원 외 4명

### 1. 제안이유

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)
- 다.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위원장의 직무(안 제8조)
- 마. 위원회 회의 등 운영(안 제9조~제12조)
- 바. 교통안전교육, 협력체계 구축,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(안 제13조~제16조)
- 사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 폐지 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제정안: "별첨"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9. 11. 15. ~ 11. 19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- 제3조(구민의 책무)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 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.
  -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「교통안전법」 제13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·유영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
- 3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- 4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- 5.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
- 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**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-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2. 위원이 품위손상·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4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- 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

- 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,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- 제11조(자료의 제출 등)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회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교통안전교육 등)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1.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
- 2.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
- 3.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처 교육
-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, 교육청,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

이 ·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 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·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 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재정 지원 등)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 치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」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과 위촉된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